

2015.3.23

'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' 일부 개정 안내

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● 개정취지

-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을 수출한 뒤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금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- 앞으로는 **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**하여 일부 중소기업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6억원을 초과하여 환급 받는 사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● 시행일자 : 15. 7. 1. (수)

2. 개정내용

제1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)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"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(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6억원 이하일 것

2.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 실적(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)이 6억원 이하일 것 [요건추가]